

Yeosu Web Contents

2024년 05월 03일 00시 58분



목차

목차	2
민원사무편람 및 서식 - 여성가족과	3
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 분할납부신청	3

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 분할납부신청

2017.07.04 조회수 259 등록자 박재원
10:40

✓ 민원사무명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 분할납부신청

다음의 사유로 과징금의 전액을 한꺼번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.

- ✓ 민원내용
1. 자연재해 또는 화재 등으로 재산에 큰 손실을 입은 경우
 2. 영업에 큰 손실을 입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
 3. 과징금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생계가 곤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
 4.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

✓ 관계법령 청소년보호법

✓ 구비서류 - 과징금 분할납부 신청서(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첨부)
 ※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제출

✓ 처리부서 여성가족과

✓ 협의부서

✓ 접수 여성가족과

✓ 수수료 없음

✓ 처리기간 신청일부터 7일 이내

✓ 기타사항

✓ 흐름도

✓ 기타참고사항

목록

COPYRIGHT © YEOSU-CITY. ALL RIGHTS RESERVED.

(<http://www.yeosu.go.kr>)

Yeosu Web Contents

